



내용증명

수 신: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6길 47 1층(진평동 1051-12)(우: 39410)

인아웃카페(대표: 서 은 아)

전화: 010-9333-2193

발 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5층 525호(등촌동)(우: 07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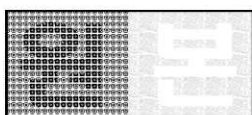
조이너스특허법률사무소(대표 변리사: 박 진 호)







전화: 010-5716-2144, 팩스: 0504-048-9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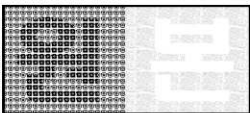
E-mail: joinus_official@naver.com

제 목: 저작권 침해 및/또는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의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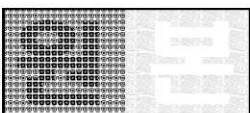
1. 당사는 저희 고객인 "민혜주"(이하, "고객"이라고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본 서신을 귀사에게 보내드립니다.
2. 저희 고객께서는 <당신이 쓰지 못한 마음>을 출간하였으며, 울산 중구 구교6길 18에 주소를 둔 "인하트쿠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께서는 귀하가 운영하는 카페("인아웃카페")(이하, "이 건 카페"라고 합니다)에서 다음과 같은 사용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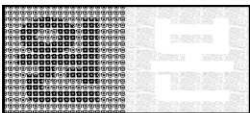
구분	저희 고객 제품 등	귀하의 카페 내 사용 행위
표장		
명함		
포장		



<p>식품 형태</p>		
<p>식품 형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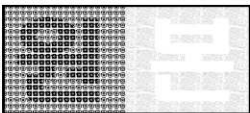


<p>식품 형태</p>		
<p>포장 방식</p>		



겉포장		
포장 방식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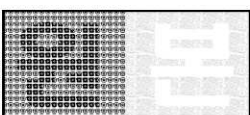
3.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및/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3조에서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과)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해위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귀하의 행위가 저희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¹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라면² 동 법률에 따른 민,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¹ 귀하는 저희 고객의 글과 그리 등을 적극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과실의 범위를 넘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² 귀하의 행위 - 즉 저희 고객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의 컨셉을 모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저희 고객의 소비자들로부터 이 건 카페가 저희 고객의 2호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킨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후원관계 내지 기업관계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직접 방지하고자 하는 혼동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위의 내용에 비추어, 저희 고객은 귀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① 저희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침해하고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온라인상의 행위를 폐기 또는 삭제³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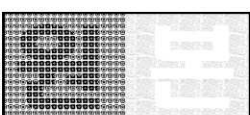
② 위의 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폐기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 또는 이를 삭제한 웹사이트 캡처 화면 등)를 보내주십시오.

③ 향후 저희 고객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서 또는 약속서를 송부하여 주십시오.

④ 이로 인하여 발생된 저희 고객의 업무상 손해(손실)⁴ 및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십시오.

³ 현재 사용중인 해당 이미지 인아웃의 로고로 쓰이는 디자인 파일 등을 <네이버 블로그>, <배달의민족> 등에서 즉각 삭제처리 할 것, 실물 명함 파기, 글 엽서가 포함된 해당 카드 파기 등 현재 문제되거나 문제될 우려가 있는 유형/무형적 물건, 온라인 상의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⁴ 이 건 카페는 저희 고객이 운영하는 카페와의 관계에서 단순한 경쟁에 그치지 않고, 저희 고객이 출간한 저작물을 모방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카페의 가치 내지 신용 손상이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의 저작물이 갖는 가치 등에 대하여도 손상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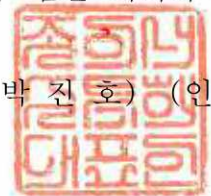
5. 저희 고객께서는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 사전 협의 없는 조치를 통해 분쟁을 확대하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호 간에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불응할 경우 상호 원만한 해결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인지하고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본 서신을 수령하신 뒤 2주 이내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이너스특허법률사무소(대표: 박진호 변리사)에게 메일 또는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16. (화)

저희 고객, "민혜주"님을 대리하여

조이너스특허법률사무소(대표: 박진호) (인)



발송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가양역더스카이밸리5차지식산업센터(등촌동) 5층 525호
박진호
수취인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6길 47 (진평동) 1층 인아웃카페
서은아

